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군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시·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군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 및 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구”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21조의3제1항”을 “법 제21조의4제1항”으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3제2항”을 “법 제21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3제2항”을 “법 제21조의4제2항”으로,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실험시설”을 “실험시설”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유의사항란의 제2호 중 “하지 않은 자는”을 “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20일
신청인	업소명(상호)	①영업의 종류
	영업(허가·등록·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공장(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내용	제 품 명	②식품의 유형
	총 내용량	1회 섭취참고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시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 방법

1. ①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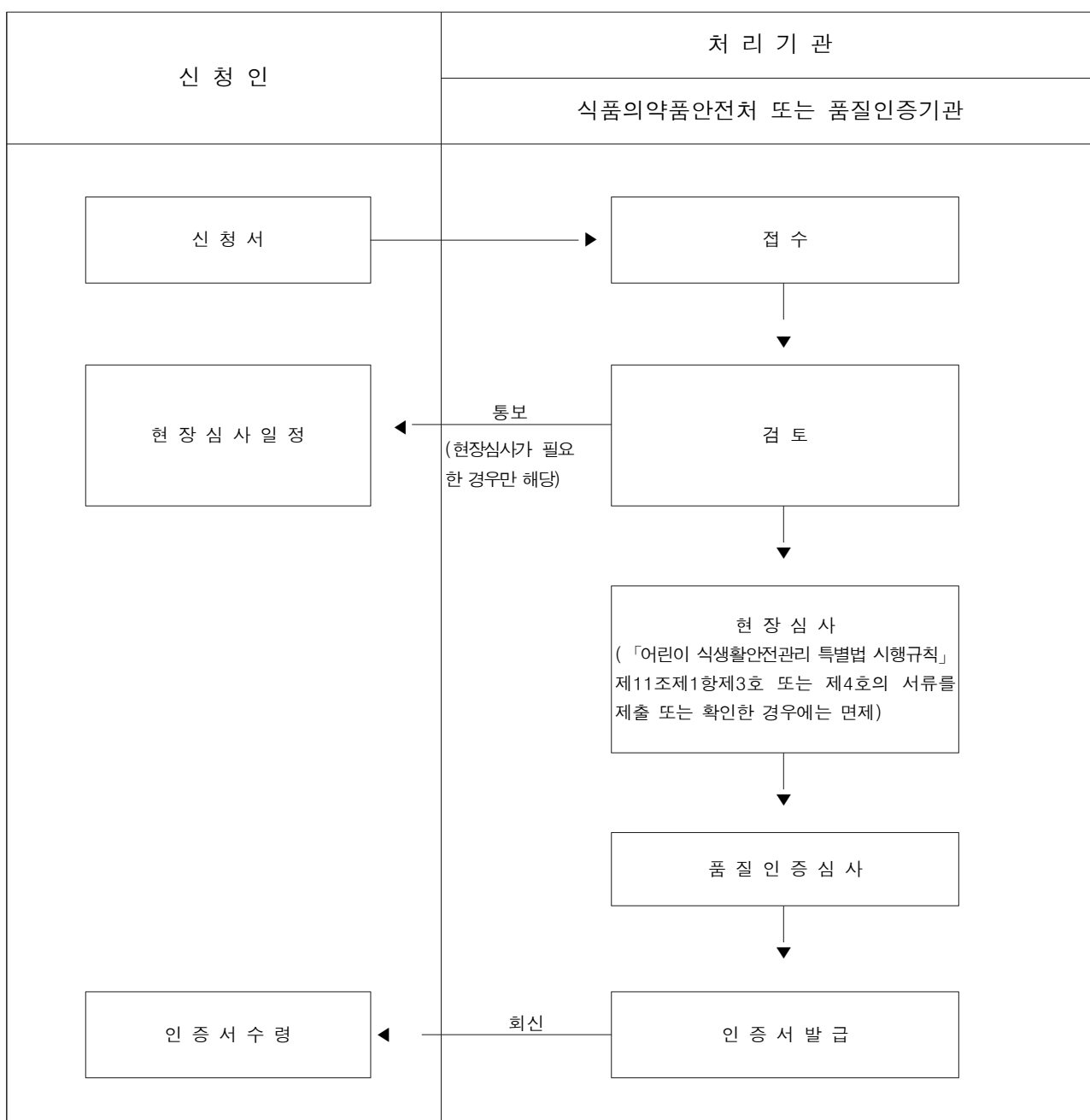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2. ②식품의 유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대표자	영업소명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분실 사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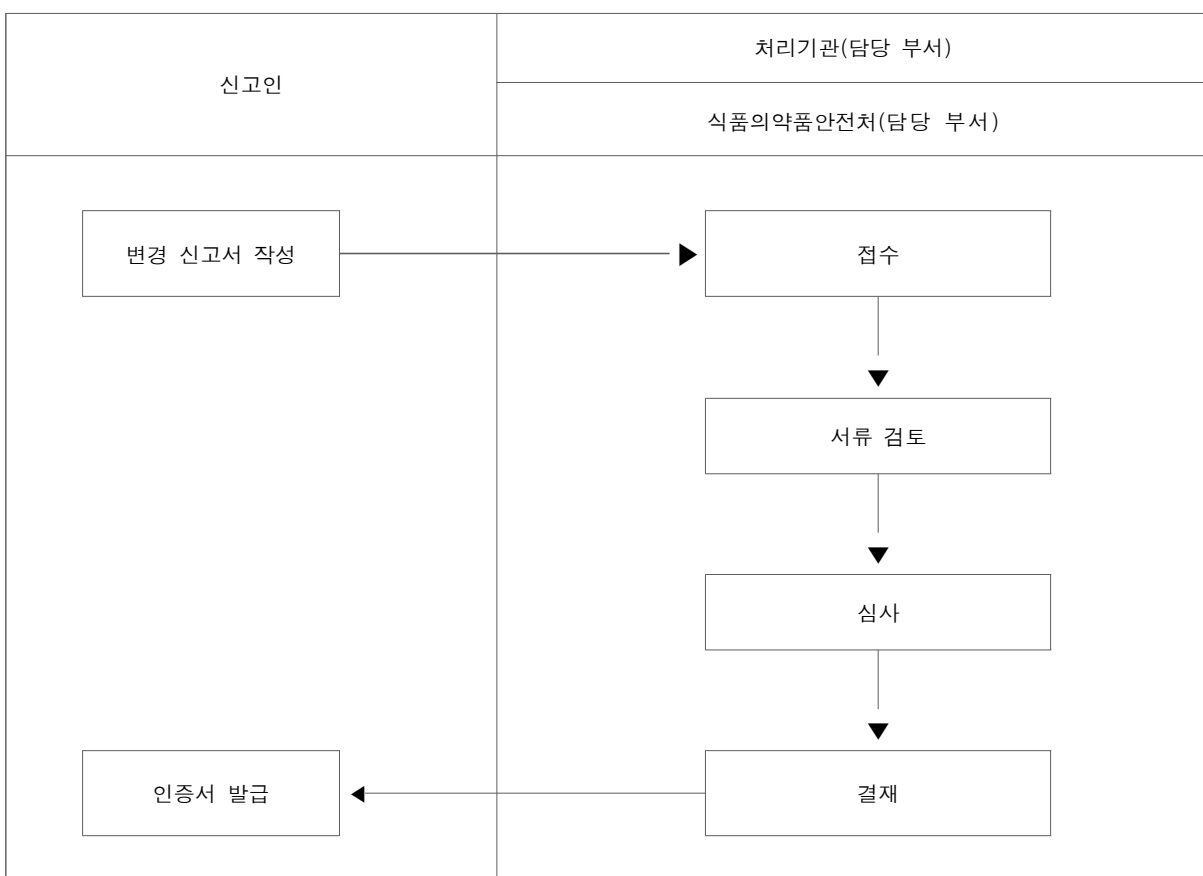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1.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지정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표시를 사용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u>시장·군수</u>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u>1월 31일까지</u>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u>식품의약품안전처장</u> 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u> ----- ----- ----- ----- <u>1월 31일까지</u> <u>식품의약품안전처장</u> --- ----- ----- ----- ----- ---. <u>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4조(조리·판매업소의 관리 방법 등) ① <u>시장·군수</u>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의 현	제4조(조리·판매업소의 관리 방법 등)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u> ----- ----- ----- ----- -----

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
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
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시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학교 20개당
2명 이상

② · ③ (생략)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 식품
의약품안전처장-----

-----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
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 -----

1. (현행과 같음)

2.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및
시 · 구-----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①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등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

②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

②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
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
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
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
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2.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_____.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

1.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 6. (생 략)

③ (생 략)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등) ① -----
-- 법 제21조의4제1항-----
----- 식
생활안전관리원-----

-----.

② ----- 법 제2

21조의3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1조의4제2항-----

1. 2.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

---- 법 제21조의4제2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